

평창 군관리계획(제2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한
평 창 군 의 회 의 건 청 취 안

2011. 10.

제출자 : 평창군수

평창 군관리계획(제2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

의안 번호	86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1. 10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평창 Art valley 조성을 위한 관광·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자연속에서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펼치고자하는 다양한 순수미술인들이 모여 작가정신을 공유하는 창작공간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미술인과 미술인, 미술인과 관객을 이어주는 문화소통의 중심공간을 창조하여 차별화된 관광인프라를 조성하여 지역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.

- 이에따라, 평창지역의 풍부하고 다양한 관광자원 및 평창지역 문화예술과 연계한 여행 관광벨트 구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평창아트밸리 관광휴양시설을 조성코자 함.

- 따라서, 계획대상지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관리가 가능한 관광휴양지로 개발하고자 『관광·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(안)』에 대한 평창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1) 용도지역결정(변경),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

○ 용도지역결정(변경)

구 분	기 정	변 경	변경후	비 고
합 계	293,615	-	293,615	-
계획관리지역	154,666	증) 138,949	293,615	-
보전관리지역	122,946	감) 122,946	-	-
농 립 지 역	16,003	감) 16,003	-	-

○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면적

기 정	변 경	증.감	비 고
-	293,615㎡	증 293,615㎡	신 설

2) 군계획시설 결정

- 교통시설 - 도로 신설 소로1류(L=459m, B=10~14m), 신설 소로2류(L=166m, B=8m)
- 방재시설 - 신설 소하천(폭원 11~18m, L=1,700m)

3. 참고사항

□ 주민의견 청취(공람공고)

- 가. 공람기간 : 2011.08.09 ~ 2011.08.28(20일간)
- 나. 공람방법 : 강원일보, 강원도민일보, 평창군 홈페이지 게재 및
용평면사무소 게시판게시
- 다. 공람장소 : 평창군청 도시과, 용평면사무소
- 라. 제출의견 : 없음

□ 주민설명회

- 가. 일 시 : 2011.08.23 14:00
- 나. 장 소 : 용평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
- 다. 의 견 : 총 8건의 의견 중 반영 8건, 미반영 0건
- 라. 주요의견 : 사업구역 하류지역 속사2리 주민들이 하천을 취수원으로 사용하는데
공사 시작 후 하천이 오염되면 식수문제가 발생하므로 대책마련 바람
- 마. 처리계획 : 오수처리장의 정화처리 수질 기준 강화, 속사리 취수원위치 변경,
신규수원개발, 아트밸리 취수원 공유 등 최적 방안을 종합 검토
하여 개발행위허가 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
하도록 계획하겠음.

□ 관련부서협의

- 가. 협의기간 : 2011.07.22 ~ 2011.08.05
- 나. 협의부서 : 3개기관, 10개부서(평창국유림관리소,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, 평창

교육지원청, 주민생활지원실, 민원봉사과, 재무과, 문화체육과, 관광경제과, 환경과, 산림과, 건설방재과, 상·하수도사업소, 농축산과)

다. 제출의견

- 산림과 : 산지관리법 제8조에 의거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에 따른 협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등으로 지정 및 결정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25°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, 26.64° 에 해당되어 저촉되며, 급경사지역의 개발계획수립(산지전용)으로 인한 재해발생 우려 및 복구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, 녹지축 단절이 우려되며,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편입된 “임야” 에 대한 구역조정 및 제척이 필요하다고 판단됨
- 평창국유림관리소 : 산1-2임의 토지이용계획상 원형존치지역은 평창아트밸리 조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입되어야 하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제척하도록 계획

라. 조치결과 : 평균경사도 25° 이상 산지 및 산림청 소유 산1-2번지내 원형존치 지역은 지구단위구역계에서 제척하였음.(제척 면적 : 2,385㎡)

평창 군관리계획(제2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

1. 용도지역 결정(변경)

1) 용도지역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 적 (㎡)		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
합 계		293,615	-	293,615	
관 리 지 역	소 계	277,612	증)16,003	293,615	
	계획관리지역	154,666	증)138,949	293,615	
	보전관리지역	122,946	감)122,946	-	
농 립 지 역		16,003	감)16,003	-	

2) 용도지역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위 치	용도지역		면 적 (㎡)	용적률 (%)	결정(변경)사유서
		기 정	변 경			
①	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산106번지 일원	보전 관리지역	계획 관리지역	122,946	100%	- 국내 작가들의 창작공간 및 일반인들과 교류의 장 제공과 평창 지역 문화예술 관광 벨트 구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, 숙박시설 및 휴양문화시설을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여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조성코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
②	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산1-2번지 일원	농림지역	계획 관리지역	16,003		

2.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

1)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구역의 세분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기정	변 경	변경후		
-	평창 Art Valley	관광·휴양형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	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505번지 일원	-	증)293,615	293,615	-	-

2)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신설	-	평창 Art Valley 제2종지구 단위 계획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설 - 위치 :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505번지일원 - 면적 : 293,615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 작가들의 창작공간 및 일반인들과 교류의 장 제공과 평창 지역 문화예술과 연계한 여행 관광벨트 구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, 숙박시설 및 휴양문화시설을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여 체계적이며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함.

3. 군계획시설 결정

가. 교통시설

1) 도로 결정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신설	소로	1	㉠	10~14	국지 도로	459	용평면 노동리 산178-2도	용평면 노동리 495-1구	일반 도로	-	-	-
신설	소로	2	㉡	8	국지 도로	166	용평면 노동리 344목	용평면 노동리 342-1도	일반 도로	-	-	-

2) 도로 결정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-	소로 1 - 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설 - 위치 : 용평면 노동리 산178-2도 일원 - 연장 : 459m - 폭원 : 10 ~ 14m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창 Art Valley의 효율적인 진출입을 위하여 군계획시설(도로)로 결정코자 함.
-	소로 2 - 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설 - 위치 : 용평면 노동리 344목 일원 - 연장 : 166m - 폭원 : 8m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위하여 평창 Art Valley내의 용평 농어촌도로 101호선을 군계획시설(도로)로 결정코자 함.

나. 방재시설

1) 하천 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		연장 (km)	폭원 (m)	면적 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점	종점	주 요 경과지					
신설	-	하천	소하천 (질골천)	용평면 노동리 138-1천	용평면 노동리 495-1구	-	1.7	11~18	21,833	-	-

2) 하천 결정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-	하 천 (질골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신설 - 위치 : 용평면 노동리 138-1천 일원 - 연장 : 1.7km - 폭원 : 11 ~ 18m - 면적 : 21,833㎡ 	- 평창 Art Valley내의 질골천 소하천정비계획을 반영하여 군계획시설(하천)으로 결정코자 함.

4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

1) 가구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도면 번호	구 분	면적(㎡)	가 구		비 고
			위 치	면적(㎡)	
	합 계	293,615	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505번지 일원	293,615	(100.0%)
①	관광휴양시설용지	152,247	-	152,247	(51.9%)
②	공공시설용지	42,563	-	42,563	(14.5%)
③	녹 지 용 지	98,805	-	98,805	(33.6%)

2)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도면 번호	구 분	획 지		비고
		위 치	면 적 (㎡)	
	합 계	-	293,615	
	① - 관광·휴양시설용지	-	152,247	
①-1	관광펜션	노동리 472번지 일원	34,921	
①-2	휴양콘도미니엄-1	노동리 464-1번지 일원	24,379	
①-3	휴양콘도미니엄-2	노동리 산107번지 일원	6,678	
①-4	휴양콘도미니엄-3	노동리 346번지 일원	10,008	
	소 계		12,071	
①-5	-1	상가시설	노동리 345번지 일원	3,015
	-2	상가시설	노동리 산88번지 일원	4,635
	-3	상가시설	노동리 513번지 일원	807
	-4	상가시설	노동리 348번지 일원	833
	-5	상가시설	노동리 산107번지 일원	863
	-6	상가시설	노동리 산107번지 일원	957
	-7	상가시설	노동리 347번지 일원	961
	소 계		52,403	
①-6	-1	전시장	노동리 472번지 일원	706
	-2	전시장	노동리 472번지 일원	702
	-3	전시장	노동리 472번지 일원	948
	-4	전시장	노동리 산103번지 일원	1,615
	-5	전시장	노동리 산103번지 일원	725
	-6	전시장	노동리 산103번지 일원	629
	-7	전시장	노동리 산103번지 일원	780
	-8	전시장	노동리 479번지 일원	984
	-9	전시장	노동리 479번지 일원	701
	-10	전시장	노동리 479번지 일원	690
	-11	전시장	노동리 479번지 일원	680
	-12	전시장	노동리 479번지 일원	993
	-13	전시장	노동리 495-1번지 일원	1,049
	-14	전시장	노동리 501번지 일원	1,101
	-15	전시장	노동리 500번지 일원	770
	-16	전시장	노동리 500번지 일원	813
	-17	전시장	노동리 504번지 일원	1,291
	-18	전시장	노동리 505번지 일원	1,262
	-19	전시장	노동리 산104번지 일원	948
	-20	전시장	노동리 산105번지 일원	749
	-21	전시장	노동리 500번지 일원	800
	-22	전시장	노동리 505번지 일원	826
	-23	전시장	노동리 505번지 일원	906
	-24	전시장	노동리 505번지 일원	995
	-25	전시장	노동리 505번지 일원	857

도면 번호	구 분	획 지		비고	
		위 치	면 적 (㎡)		
①-6	-26	전시장	노동리 495-1번지 일원	782	
	-27	전시장	노동리 산90번지 일원	699	
	-28	전시장	노동리 산90번지 일원	696	
	-29	전시장	노동리 산90번지 일원	727	
	-30	전시장	노동리 산90번지 일원	689	
	-31	전시장	노동리 497-1번지 일원	659	
	-32	전시장	노동리 508번지 일원	650	
	-33	전시장	노동리 507번지 일원	745	
	-34	전시장	노동리 507번지 일원	686	
	-35	전시장	노동리 508번지 일원	633	
	-36	전시장	노동리 506번지 일원	1,036	
	-37	전시장	노동리 산105번지 일원	973	
	-38	전시장	노동리 517번지 일원	917	
	-39	전시장	노동리 517번지 일원	1,032	
	-40	전시장	노동리 515번지 일원	1,165	
	-41	전시장	노동리 515번지 일원	1,257	
	-42	전시장	노동리 514번지 일원	1,496	
	-43	전시장	노동리 513번지 일원	844	
	-44	전시장	노동리 513번지 일원	784	
	-45	전시장	노동리 산106번지 일원	848	
	-46	전시장	노동리 517번지 일원	662	
	-47	전시장	노동리 517번지 일원	762	
	-48	전시장	노동리 517번지 일원	828	
	-49	전시장	노동리 517번지 일원	813	
	-50	전시장	노동리 518번지 일원	807	
	-51	전시장	노동리 518번지 일원	694	
	-52	전시장	노동리 518번지 일원	1,153	
	-53	전시장	노동리 515번지 일원	1,298	
	-54	전시장	노동리 495-1번지 일원	1,056	
	-55	전시장	노동리 513번지 일원	1,109	
	-56	전시장	노동리 509-1번지 일원	1,109	
	-57	전시장	노동리 513번지 일원	760	
	-58	전시장	노동리 513번지 일원	782	
	-59	전시장	노동리 513번지 일원	732	
①-7	소 계			9,064	
	-1	전시장 및 박물관	노동리 497번지 일원	2,527	
	-2	전시장 및 박물관	노동리 496번지 일원	6,537	
①-8	야외공연장-1	노동리 산103번지 일원	1,287		
①-9	야외공연장-2	노동리 509번지 일원	1,436		

도면 번호	구 분	획 지		비고
		위 치	면 적 (㎡)	
	② - 공공시설용지	-	42,563	
②-1	오수처리장	노동리 344번지 일원	982	
②-2	주차장	노동리 343번지 일원	1,578	
②-3	주차장	노동리 513번지 일원	948	
②-4	도 로	노동리 513번지 일원	22,082	
②-5	하 천	노동리 498번지 일원	16,973	
	③ - 녹지용지	-	98,805	
③-1	조성녹지	노동리 산90번지 일원	67,077	
③-2	복원녹지	노동리 산1-2번지 일원	8,935	
③-3	원형녹지	노동리 산104번지 일원	22,793	

5. 건축물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① - 1	노동리 468번지 일원	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정용도 : 건축법 시행령 별표1 -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(관광펜션) 권장용도 :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
		건폐율	▪ 40%이하
		용적률	▪ 100%이하
		높 이	▪ 3층이하
		배 치	▪ 도면참조
		형 태	▪ 경사형 지붕 권장
① - 2 ~ ① - 3	노동리 494-1번지 일원	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정용도 : 건축법 시행령 별표1 -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(휴양콘도미니엄) 권장용도 :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
		건폐율	▪ 40%이하
		용적률	▪ 100%이하
		높 이	▪ 3층이하
		배 치	▪ 도면참조
		형 태	▪ 경사형 지붕 권장
① - 4	노동리 346번지 일원	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정용도 : 건축법 시행령 별표1 -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(휴양콘도미니엄) 권장용도 :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
		건폐율	▪ 40%이하
		용적률	▪ 100%이하
		높 이	▪ 6층이하
		배 치	▪ 도면참조
		형 태	▪ 경사형 지붕 권장
① - 5	노동리 산88번지 일원	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정용도 : 건축법 시행령 별표1 - 제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시설 권장용도 :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
		건폐율	▪ 40%이하
		용적률	▪ 100%이하
		높 이	▪ 3층이하
		배 치	▪ 도면참조
		형 태	▪ 경사형 지붕 권장
		색 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벽채 : 베이지 (7.5YR 8/1) 지붕 : 밤색 (7.5YR 3/4)
		색 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벽채 : 베이지 (7.5YR 8/1) 지붕 : 밤색 (7.5YR 3/4)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① - 6	노동리 517번지 일원	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정용도 : 건축법 시행령 별표1 -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 권장용도 : 건축법 시행령 별표1 -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
		건폐율	▪ 40%이하
		용적률	▪ 100%이하
		높 이	▪ 3층이하
		배 치	▪ 도면참조
		형 태	▪ 경사형 지붕 권장
① - 7	노동리 496번지 일원	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정용도 : 건축법 시행령 별표1 -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박물관 권장용도 :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
		건폐율	▪ 40%이하
		용적률	▪ 100%이하
		높 이	▪ 3층이하
		배 치	▪ 도면참조
		형 태	▪ 경사형 지붕 권장
① - 8 ~ ① - 9	노동리 509번지 일원	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정용도 : 건축법 시행령 별표1 - 관광 휴게시설 권장용도 :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
		건폐율	▪ 20%이하
		용적률	▪ 80%이하
		높 이	▪ 1층이하
		배 치	▪ 도면참조
		형 태	▪ 경사형 지붕 권장
색 채	▪ 벽채 : 베이지 (7.5YR 8/1)		
	▪ 지붕 : 밤색 (7.5YR 3/4)		

평창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개요

1. 계획의 개요

가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(주)평창아트밸리 조성사업
- 조성면적 : 293,615㎡
- 주요시설 : 숙박시설 269실(휴양콘도미니엄 239실, 펜션 30실), 휴양문화시설(60동), 상가시설(7동)
- 사업비 : 약 870억원
- 사업기간 : 2010년 1월 ~ 2014년 12월(5년간)
- 시행자 : (주)평창아트밸리 대표이사 정재현

나. 계획의 범위

1) 공간적 범위

- 위치 :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505번지 일원
- 면적 : 293,615㎡

2) 시간적 범위

- 기준년도 : 2010년
- 목표연도 : 2014년

3) 내용적 범위

■ 군관리계획

-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계획
-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계획
-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상에 관한 계획
-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

■ 기타계획

- 환경적 요인에 대한 검토계획
- 교통적 요인에 대한 검토계획
-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계획
-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경관영향 검토계획

다. 계획의 추진경위

- 2009. 07. 24 : 평창미술인마을 추진위원회 공식 출범[추진위원 : 미술인 1,200여 명]
- 2009. 12. 02 : 제1차 사업협약 체결[(주)현대엠코건설, H&H IPJ KOREA(현 Hanic 홀딩스)]
- 2010. 01. 28 : “관광·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” 제출
- 2010. 03. 12 : “관광·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” 취하서 제출
- 2010. 03. 24 : 제2차 사업협약체결[CJ건설주식회사 선정 및 CJ그룹의 문화콘텐츠 및 Membership 제공협약]
- 2010. 05. 24 :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“관광·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” 제출
- 2010. 06. 23 : 평창군계획위원회 입안 자문
- 2010. 06. 28 : 주민제안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
- 2011. 01.12 : 강원도 사전스크린 협의
- 2011. 06. 10 ~ 2011. 06. 24 :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회 의견수렴
- 2011. 07. 22 ~ 2011. 08. 05 : 관련실과부서 협의
- 2011. 08. 09 ~ 2011. 08. 28 : 주민공람공고(20일)
- 2011. 08. 23 : 주민설명회(용평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14:00)

2. 토지조서 및 주민동의현황

지목별 총괄표

구 분	계	구거	대지	도로	목장	임야	전	비고
면 적 (㎡)	293,615	32,389	5,495	7,403	1,93492	52,902	1,934	
필지수(필지)	85	2	4	7	64	7	1	
구성비(%)	100.0	11.0	1.9	2.5	65.9	18.0	0.7	

소유자별 총괄표

구 분	합 계	사유지	국·공유지			비고
			소계	국유지	공유지	
면적(㎡)	293,615	223,943	69,672	49,338	20,334	
필지수(필지)	85	74	11	10	1	
구성비(%)	100.0	76.3	23.7	16.8	6.9	

주민동의현황

구 분	계획구역				동의 면적 및 비율	
	면적 및 구성비		필지수 및 구성비		면적(㎡)	비율(%)
	㎡	%	필지	%		
계	293,615	100.0	85	100.0	223,943	76.3
국공유지	69,672	23.7	11	12.9	-	-
사유지	223,743	76.3	74	87.1	223,943	100.0

지번별 편입토지조서

순 번	소재지	지 번	지 목	면적(㎡)		소유자	동의여부 (동의○, 미동의x)
				공부상	편 입		
합 계				6,687,781	293,615		
1	노동리	262-1	도로	8,392	890	국(건설교통부)	
2	노동리	342-1	도로	702	245	국(건설교통부)	
3	노동리	342	목장	3,531	2,802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4	노동리	343-3	도로	84	84	국(건설교통부)	
5	노동리	343	목장	595	595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6	노동리	344	목장	2,764	2,764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7	노동리	345	목장	1,131	1,131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8	노동리	346	목장	2,066	2,066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9	노동리	347	목장	1,289	1,289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10	노동리	348	목장	235	235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11	노동리	349	전	1,934	1,934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12	노동리	350	목장	1,792	1,792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13	노동리	463	목장	5,762	5,762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14	노동리	464	목장	582	582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15	노동리	465	목장	486	486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
순 번	소재지	지 번	지 목	면적(㎡)		소유자	동의여부 (동의○, 미동의x)
				공부상	편 입		
16	노동리	466	목장	1,484	1,484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17	노동리	467	목장	317	317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18	노동리	468	목장	1,987	1987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19	노동리	469	목장	202	202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20	노동리	470	목장	12,476	12,476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21	노동리	471	목장	1,458	1458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22	노동리	472	목장	10,000	10,000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23	노동리	473	목장	228	228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24	노동리	474	목장	288	43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25	노동리	475	목장	231	139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26	노동리	476	목장	397	397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27	노동리	477	목장	102	102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28	노동리	478	목장	377	377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29	노동리	479	목장	4,714	4,714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30	노동리	480	목장	936	936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31	노동리	481	목장	417	417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32	노동리	482	목장	1,597	1,597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33	노동리	483	목장	426	426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34	노동리	487	목장	1,352	298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35	노동리	491	목장	1,603	667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36	노동리	492-1	구거	8,636	5,568	국(건설교통부)	
37	노동리	492	목장	347	347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38	노동리	493	목장	417	417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39	노동리	494-1	목장	4,264	4,264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40	노동리	494	대지	2,658	2,658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41	노동리	495-1	구거	34,390	26,821	국(건설교통부)	
42	노동리	495	대지	420	420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43	노동리	496	대지	2,238	2,238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44	노동리	497-1	도로	430	430	국(건설교통부)	
45	노동리	497	목장	793	793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46	노동리	498	목장	2,040	2,040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47	노동리	499-1	도로	1,072	1,072	국(건설교통부)	
48	노동리	499	목장	281	281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49	노동리	500	목장	2,526	2,526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50	노동리	501-1	도로	3,252	3,204	국(건설교통부)	

순 번	소재지	지 번	지 목	면적(㎡)		소유자	동의여부 (동의○, 미동의x)
				공부상	편 입		
51	노동리	501	목장	122	122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52	노동리	502	목장	2,185	2,185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53	노동리	503	목장	69	69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54	노동리	504	대지	179	179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55	노동리	505	목장	6,628	6,628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56	노동리	506	목장	1,220	1,220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57	노동리	507	목장	2,331	2,331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58	노동리	508	목장	6,294	6,294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59	노동리	509-1	도로	1,478	1,478	국(건설교통부)	
60	노동리	509	목장	390	390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61	노동리	510	목장	1,782	1,782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62	노동리	511	목장	744	744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63	노동리	512	목장	89	89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64	노동리	513	목장	8,651	8,651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65	노동리	514	목장	188	188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66	노동리	515	목장	3,160	3,160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67	노동리	516	목장	188	188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68	노동리	517	목장	5,663	5,663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69	노동리	518	목장	1,633	1,633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70	노동리	산1-2	임야	5,986,342	9,546	국(산림청)	
71	노동리	산88	임야	8033	5,400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72	노동리	산90	목장	48,992	9,303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73	노동리	산91	목장	49,686	3,814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74	노동리	산93	목장	34,612	15,857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75	노동리	산94	임야	41,554	3,030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76	노동리	산99	목장	24,595	3,999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77	노동리	산100	목장	40,661	9,358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78	노동리	산102	목장	12,198	2,710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79	노동리	산103	임야	34,810	12,005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80	노동리	산104	목장	9,025	9,025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81	노동리	산105	목장	9,421	9,421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82	노동리	산106	목장	20,231	20,231	평창그린랜드영농조합법인	○
83	노동리	산107	임야	58,413	20,334	평창군	
84	노동리	산136	임야	20,926	2,039	정재현	○
85	노동리	산137	임야	109,587	548	정재현	○

관 련 도 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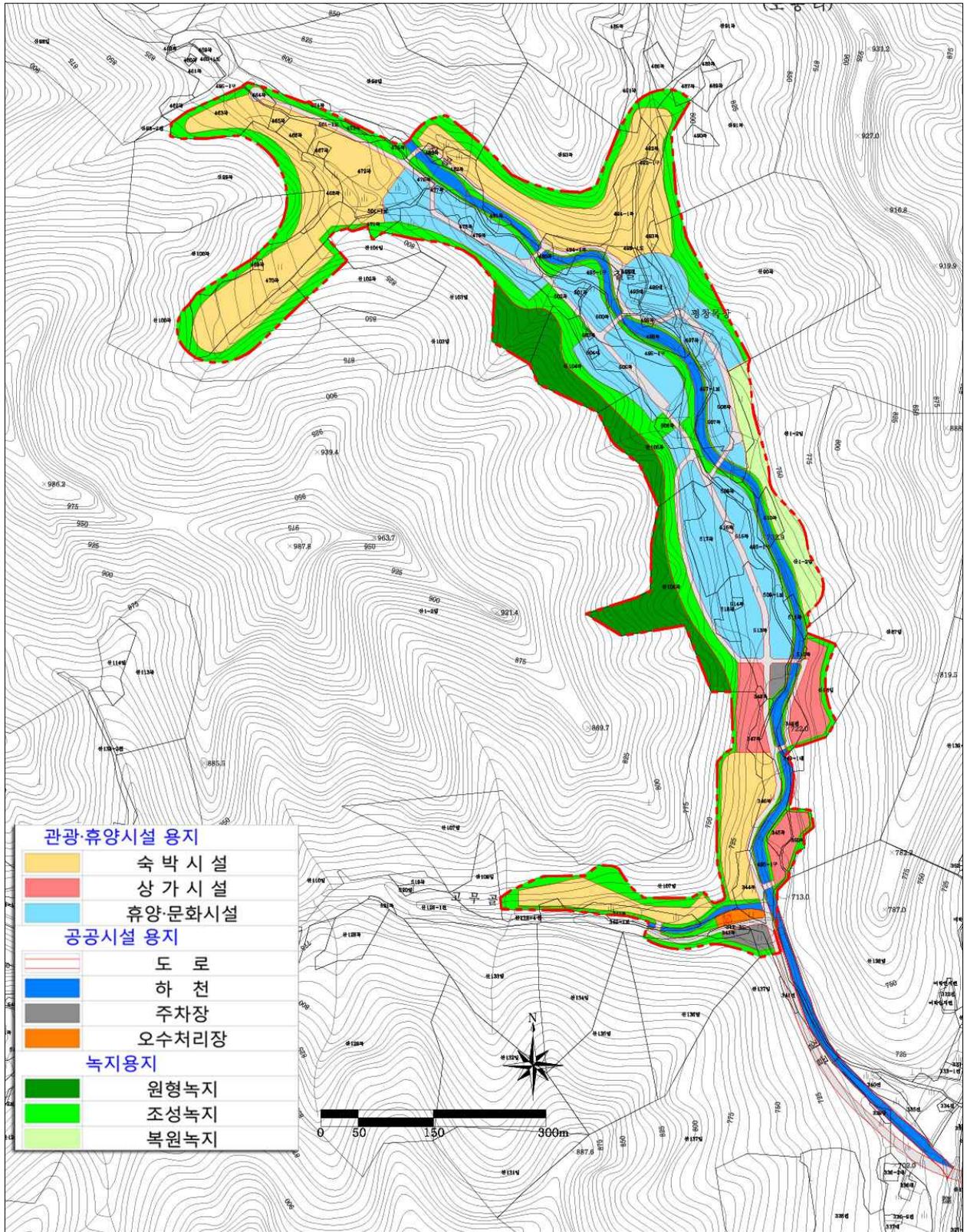
항공 사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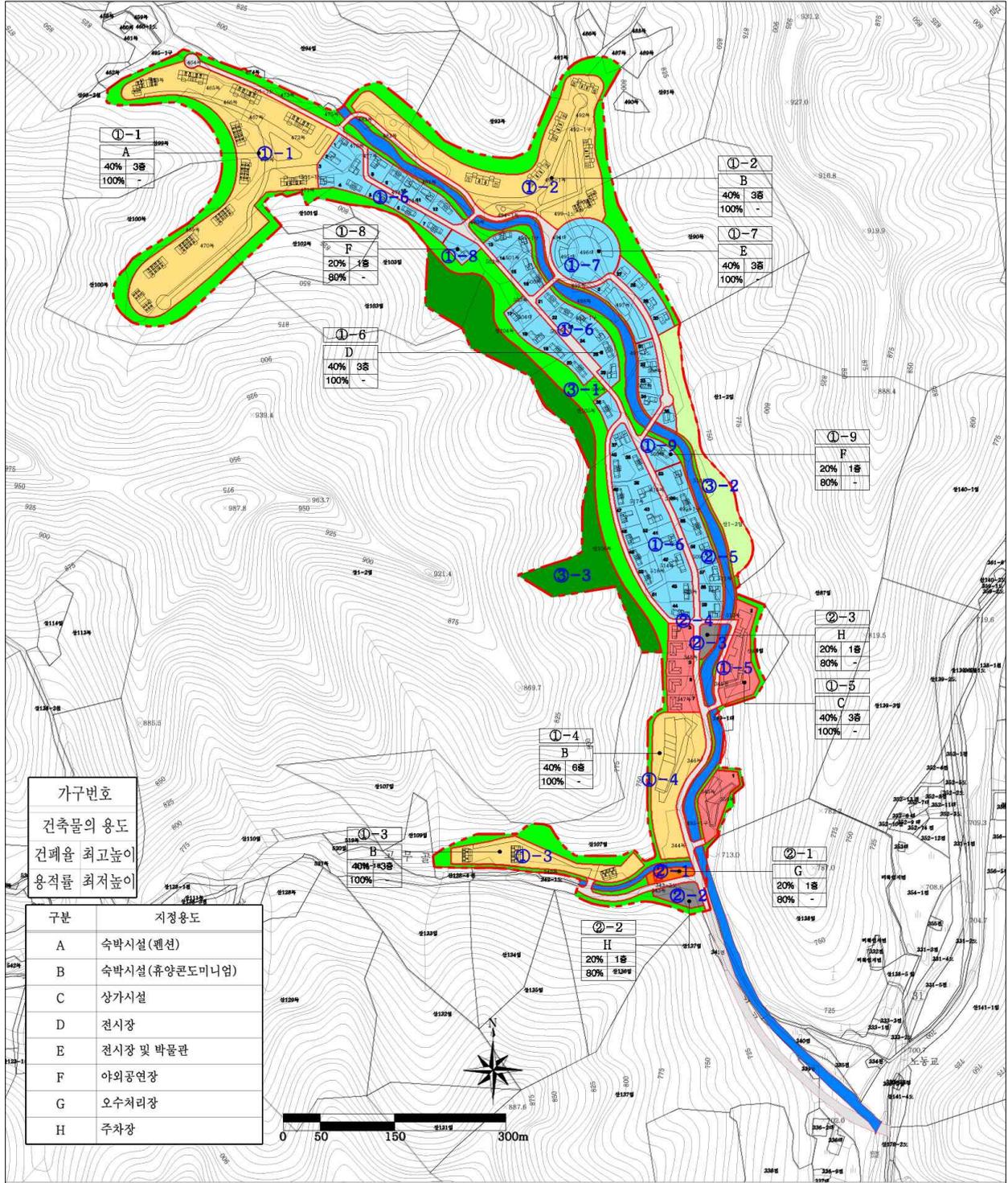
평창 Art Valley 조감도



토지이용계획(안)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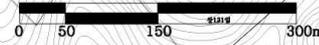


종합도



가구번호
 건축물의 용도
 건폐율 최고높이
 용적률 최저높이

구분	지정용도
A	숙박시설(펜션)
B	숙박시설(휴양콘도미니엄)
C	상가시설
D	전시장
E	전시장 및 박물관
F	야외공연장
G	오수처리장
H	주차장



관계법령 발췌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28조 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⑤건설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2조 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⑦법 제28조 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·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
 - 가. 도로중 주간선도로(시·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·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·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 - 나. 철도중 도시철도
 - 다.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(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)
 - 라. 공원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 공원은 제외한다)
 - 마. 유통업무설비
 - 바. 학교중 대학
 - 사. 운동장
 - 아. 삭제 <2005.9.8>
 - 자.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
 - 차. 화장장
 - 카. 공동묘지
 - 타. 납골시설
 - 파. 하수도(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)
 - 하. 폐기물처리시설
 - 거. 수질오염방지시설